

인천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가단2045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구영관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광래(소송구조)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은 117,704,38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704,3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 1)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이 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9703, 2018. 6. 5. 선고), 2021. 12. 7. 기준으로 그 채권금액은 117,704,387원이다.
- 2) 주식회사 C은 2021.경 대한민국(소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과 ‘D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0,000,000원, 148,126,950원으로 정한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21.경 화성시(소관 : E)와 ‘F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72,990,000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 3) 주식회사 C은 2021. 6. 22. 피고에게 ‘D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후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21. 3. 22. 피고에게 ‘F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E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후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이하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 이후 대한민국과 화성시는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4)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1~9, 변론 전체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주식회사 C의 무자력

원고는 주식회사 C에 위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여부

주식회사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C과 피고의 관계, 위 계약 체결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상회복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은 117,704,38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704,3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조현욱

별지